

의안번호	제805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27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805
----------	-----

제출연월일 : 2024년 11월 2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은 국가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에 반영되어 있는 정부 주도 사업으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 예정임
- *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 켄달스퀘어를 모델로 하며,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산·학·연·병 융합배치 계획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LH와 필요부지 및 위치, 용지매입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1단계 부지에 대해 취득을 하고자 함
- 부지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1단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 일반회계

- 용도 : 1단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예정부지 취득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511-2, 518-1, 496
- 매입규모 : 53,291㎡, 3필지 ※ 1~3단계 총면적 : 607,947㎡
- 매입기간 : '25년 ~ '26년(2년)
- 소요예산 : 710억원(도 355억원, 청주시 355억원)

※ 단계별 도비소요액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25	'26	'27	'28	'29	'30	'31	'32	
104	251	389	594	795	562	454	308	3,457

- 계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의계약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봉산리 511-2, 518-1, 496	53,291	71,000,000	'25~'26	1단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건물							
	기타							
1	토지	봉산리 511-2	16,348	21,780,564	'25~'26	1단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건물							
	기타							
2	토지	봉산리 518-1	18,400	24,514,458	'25~'26	1단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건물							
	기타							
3	토지	봉산리 496	18,543	24,704,978	'25~'26	1단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p>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